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651
----------	-------

발의연월일 : 2025. 12. 26.

발의자 : 손명수 · 이해민 · 황명선
문진석 · 김태선 · 한준호
최혁진 · 이성윤 · 남인순
박지원 · 김영배 · 홍기원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용인시 서천동에서 항타기가 전도되어 인근 주민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다시 한번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특히 항타기 · 타워크레인 등 높은 곳에서 운용되는 대형 건설기계가 전도되는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함.

이에 항타기 · 타워크레인 설치 · 해체 · 조립 시 실시토록 하는 안전조치 의무를 고장 및 파손 시 수리를 하는 경우에도 확대 적용하고, 주거밀집지역에서 설치 작동하려는 경우 전도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민 안전 확보와 재산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6조 등).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조립하는”을 “조립하거나 고장·파손 등에 따른 수리를 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설치·해체·조립 또는 수리를 실시하려는 자는 해당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체 없이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건설공사도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경 내의 주거 밀집지역에서 제1항에 따른 기계·기구 또는 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작동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계·기구 또는 설비 등의 전도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69조제1호 중 “제76조”를 “제76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제175조제4항제3호 중 “제77조제1항”을 “제76조제2항, 제77조제1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등을 설치하였거나 작동하고 있는 건설공사도급인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